

구분	지원내용				
	감면조건		구분		내용
세금감면	외국의료기관	5백만 달러이상 투자자	국세	관세	5년간 100%
	관광업	1천만 달러 이상 투자자	지방세	취득세/재산세	7년간 100%, 3년간 50%
			국세	관세	5년간 100%
	개발사업 시행자	3천만 달러 이상투자자 외투비율50% 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 달러이상	지방세	취득세/재산세	7년간 100%, 3년간 50%
			국세	관세	5년간 100%
	관광업	2천만 달러 이상 투자자 (위원회 심의)	지방세	취득세/재산세	7년간 100%, 3년간 50%
국세			관세	5년간 100%	
자금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임대한 부지의 조성,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</li> <li>•도로,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 국고지원</li> <li>•국·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·허가 또는 대부·매각</li> <li>•의료·교육·연구시설·주택 등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</li> </ul>				
경영환경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외국인투자기업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배제</li> <li>•외국인투자기업 국가유공자·장애인 의무 고용제 배제</li> <li>•외국인투자기업 주휴무급제,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·기간 확대</li> <li>•입주기업 출자총액 제한제도 배제</li> </ul>				
생활환경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(초·중·고·대학)</li> <li>•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(내국인 진료 가능)</li> </ul>				
카지노업 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외국인 투자금액 5억달러 이상의 경우 카지노업 허가 승인</li> </ul>				

\* 대상업종 :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종합유원시설업, 국제회의시설, 휴양콘도미니엄업, 청소년수련시설 등

## 외국인투자절차

- 1 외국인투자신고 (KOTRA, 외국환은행)
- 2 외투자금 송금 (자본납입계좌 예치,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발급)
- 3 법인설립 등기 (법원 등기소)
-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(본점소재지 관할세무소)
-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이체 (외국환은행)
- 6 외국인투자 기업등록 (최초 신고기관)

# 웅동 관광레저단지 투자안내

Investment Guide : Ung-Dong Tourism and Leisure Complex



